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독도의 날 명시적 규정 및
독도 견학·방문 사업의 업무위탁 등〉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414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독도의 날 명시적 규정 및 독도 견학·방문 사업의 업무위탁 등	3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일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독도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 각각 신설).

Ⅲ. 검토의견

1. 독도의 날 명시적 규정 및 독도 견학·방문 사업의 업무위탁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안 제5조제13호·제14호),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4조), 독도의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 한 사항
<신 설>	14.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15. -----제14호-----

16. -----제14호-----

제14조(독도의 날) ①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영토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역사적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에 관한 업무를 독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 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안 제5조제13호 및 제14호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독도의 보전·관리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5조 각 호(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¹⁾인바, 입법 취지와 더불어 관계부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와 해양수산부 등 부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는 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독도의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됨.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사회적배려층, 초중고 학생, 교원, 원어민 교사,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독도 견학 및 방문사업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임.

< 독도 견학 및 방문사업 현황(2025년 독도시행계획 기준) >

- 해수부 : 사회적배려층(장애우, 저소득층, 결손가정 자녀) 대상(4.64억원)
- 교육부 : 초중등 사회과 교원, 초중고 학생, 독도체험관 해설사·시민 대상(2.4억원)
- 국가보훈부 : 독도 동아리 활동 청소년 대상(1.46억원)
- 경북도 : 원어민 교사, 유학생 대상(3억원) / 교사 및 학생 대상(2.3억원)

* 자료 : 해양수산부

문 의 처

02)6788-5418